

의안번호	2213268
의 퇴 인	이수진 의원
회 답 일	2025.11.10.
추 계 번호	25E53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
부가가치세 면제 등 대신 영세율 적용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425억원, 2030년 796억원 등 2026~2030년 5년 간 총 3,188억원(연평균 63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2,382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807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29	누적	연평균
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(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)	-425	-593	-653	-721	-796	-3,188	-638
- 국세(74.7%)	-318	-443	-488	-538	-594	-2,382	-476
- 지방소비세(25.3%)	-108	-150	-165	-182	-201	-807	-161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7호 신설	○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- 개정안은 「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대표발의, 2213267)」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, 해당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(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)를 삭제하는 내용임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7호 신설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동 개정안은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(이하 ‘생리대’)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세율로 변경 시 세수효과를 추계함
 - 현행 제도상 국내산 생리대는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므로, 영세율 제도로 변경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수 감소 규모를 추계함
 -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나 영세율 제도로 변경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, 해당 규모만큼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함
 - 현행 제도상 수입산 생리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영세율 적용 시 세액이 모두 면제될 것이므로, 이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함
- 국내산 생리대는 국내 생리대 출하액에서 수출액을 제외한 국내 판매분 매출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시 감면액과 영세율 적용 시 감면액을 산출한 후 차이를 계산함
 - 추계기간 매출액(공급가액 기준)은 최근(2019~2023년¹⁾) 연평균 증감률 추세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- 수입산 생리대는 수입 시 부과된 실제 부가가치세액 자료를 활용
 - 추계기간 부가가치세액은 최근 최근(2019~2024년) 연평균 증감률 추세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1) 매출액은 2023년 자료가 최신 자료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국내산 생리대

- 국내 출하액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생리대 매출액은 2019년 3,129 억원에서 2023년 4,801억원으로 증가(연평균 11.3%)한 것으로 추정
 - 국내산 매출액은 국내 업체의 연간 출하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하여 산출
 - 수출액의 경우 생리대 품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품목코드(HS)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, 관련 품목코드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사용²⁾
 - 수출액(달러 기준)에 연간 평균 환율(원/달러)을 반영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함
- * ('19) 1,166 ('20) 1,180 ('21) 1,144 ('22) 1,292 ('23) 1,654

[표 2] 국내산 생리대 매출액 추정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감률
출하액 ¹⁾ (A)	3,669	4,703	4,358	4,744	5,216	9.2
수출액 ²⁾ (B)	540	629	551	483	415	-6.3
국내산 매출액 (C=A-B)	3,129	4,075	3,807	4,261	4,801	11.3

주: 1) 「광업제조업조사」의 출하액에는 부가가치세액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

2) 관세청의 수출액 자료(미국달러 기준)에 해당 연도의 원/미국달러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
자료: 통계청, 연도별 「광업제조업조사」; 관세청, 연도별 수출입무역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6년 귀속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감면액은 155억원, 영세율 적용 시 감면액은 662억원으로 예상되며, 제도 변경 시 감면액은 5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
 - 향후 생리대 매출액은 최근 5년 연평균 증감률(11.3%)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국내산 생리대 매출액 추정: 2024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매출액	5,343	5,946	6,618	7,365	8,197	9,122	10,153

2) '위생 타월(패드)·탐폰(tampon), 유아용 냅킨·냅킨라이너(napkin liner)와 이와 유사한 물품(HS Code 9619.00)'의 하위 품목 중 생리대 관련 6개 품목코드(HS Code 9619.00-1090, 9619.00-2000, 9619.00-3010, 9619.00-3020, 9619.00-4000, 9619.00-9090)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사용함. 다만, 동 통계자료에는 생리대 이외에 다른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

-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시 감면액은 ‘매출액 × (1 - 부가가치율) × 세율(10%)’로 추정
 -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 「기업경영분석」 자료 상 해당 품목과 관련이 높은 산업(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)의 ‘부가가치율’을 적용하며, 최근 평균 부가가치율(23.4%)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[표 4] 국내산 생리대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: 2019~2024년

(단위: %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(한국은행, 「기업경영분석」)	24.2	25.9	23.1	22.0	23.0	22.4	23.4

-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감면액은 ‘매출액 × 세율(10%)’로 추정
-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영세율로 변경시 감면액은 2026년 507억원 증가 예상

[표 5] 국내산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영세율 제도로 변경 시 감면액 변화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면세 적용 시 감면액(A)	155	173	192	214	238
영세율 적용 시 감면액(B)	662	737	820	912	1,015
감면액 차이(C=A-B)	507	564	628	698	777

나. 수입산 생리대

- 생리대 수입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(관세청 제출자료)은 2019년 62억 원에서 2024년 50억 원으로 연평균 4.3% 감소하는 추세
 - 생리대 품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품목코드(HS)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, 관련 품목코드별(수출액 품목과 동일)로 수입신고 당시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집계

[표 6] 생리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현황: 2019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감률
부가가치세액	62	62	55	57	54	50	-4.3

자료: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감면액은 2026년 45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

- 향후 생리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최근 연평균 증감률(-4.3%)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수입산 생리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현재 과세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전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추정

[표 7] 수입산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영세율로 변경 시 감면액 변화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감면액	47	45	44	42	40	38

다. 세수효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생리대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수(지방소비세 포함)는 2026년 425억원, 2030년 796억원 등 2026~2030년 5년 간 총 3,188억원(연평균 63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- 국내산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영세율로 변경 시 세수효과와, 수입산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영세율로 변경 시 세수효과를 합산함
- 추계에 활용한 자료가 귀속 기준임을 감안해, 징수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함
 - 국내산의 경우 국내 일반과세자의 신고·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/4, 차년도에 1/4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
 - 수입산의 경우 수입신고 시 세액이 신고·납부되므로, 귀속 기준 금액이 징수 기준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반영

- 생리대 품목과 일치하는 수출입 품목코드(HS)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추계에서는 생리대 품목을 포함한 관련 품목코드(HS)에 해당하는 수출입액을 활용하였으므로, 이에 따른 추계 결과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[표 8] 생리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국내산 생리대	-380	-550	-612	-681	-758	-2,980	-596
수입산 생리대	-45	-44	-42	-40	-38	-209	-42
전체	-425	-593	-653	-721	-796	-3,188	-638

주: 국내산의 경우 정수 기준으로 조정함

※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는 「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이수진의원 대표발의, 2213267)의 의결을 전제로 재정수입의 변화를 추계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